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4서식] <개정 2020. 6. 4.>

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 즉시
신청인 (등록의무자)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(휴대전화) ( )
	소속	직위	직급 등
	주소		

최종 재산등록(변동)사항 신고 기준일	
유예 신청 사유	[ ]재외공관 근무 [ ]해외주재사무소 근무 [ ]교육파견 [ ]휴직 [ ]기타 ( )
유예 신청 사유 발생일 및 종료일	발생일 . . . 종료일 . . .
유예 신청 재산신고유형	[ ]정기변동 신고 [ ]의무면제 신고
유예 신청 연도	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(회)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등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인사발령사항)

유의사항

○ 신고유예기간 중이라도 유예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<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'직급 등'란 작성방법>

1.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·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[예: 고위공무원 가등급]
2.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(외무공무원의 경우)을 적으십시오. [예: 서기관, 8등급]

업무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·제출	→	신고 유예 여부 결정	→	신고 유예 여부 통보
(등록의무자)		(등록기관의 장)		(등록기관의 장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